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진선아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지원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u>
<u>4. ~ 8.</u> (생략)	<u>5. ~ 9.</u>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